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0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04월 27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민간위탁기관의 남설 방지와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업무를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제4항).

#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“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” 를 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개정안	수정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(청소년노동인권센터)</p> <p>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</li> <li>2.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</li> <li>3.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</li> <li>4.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</li> <li>5.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센터의 <u>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청소년노동인권센터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센터의 <u>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
개정안	개정안	수정안
	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⑤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사용자”란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사용자의 책무)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, 신체적·정신적·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사용자는 「근로기준법」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 중 “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”를 “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
2.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

3.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종전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.

제7조(청소년노동인권센터)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

2.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

3.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

4.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

5.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제7조~제10조 (생략)</p>	<p>여 <u>“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”</u> 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</li> <li>2.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</li> <li>3.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</li> <li>4.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</li> <li>5.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, 공인 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~제11조 (현행 제7조~제10조와 같음)</p>